

2026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공고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산림청 고시 제2021-117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I 원서접수

- 응시 자격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양성기관의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과정별 교육시간(1급 130시간, 2급 158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자
- 접수 기간 : '25. 12. 5.(금) 10:00 ~ 12. 14.(일) 15:00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https://license.fowi.or.kr>
 -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응시 수수료 : 없음
- 응시 표 :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 가능
- 제출 서류 : 사진(6개월 이내의 컬러 반명함판 사진) 등

II 평가시험

- 시험일자 : 2026년 1월 31일(토)
- 장 소 : 충남여자중학교(대전 중구 동서대로 1368)
- 시험시간 : 1급(4과목, 100분), 2급(4과목, 100분)

과정	시험시간		시험 과목	문형	문항 수	배 점
	입실	평가				
2급	9:30 ~ 10:30 (60분)	11:00 ~ 12:40 (100분)	① 산림치유 대상 이해 ② 산림치유 자원 이해 ③ 산림치유 기획.관리 ④ 산림치유 실행	선택형 (5지 택1)	각 과목 25문항 (총 100문항)	각 과목 100점 (문항당 4점)
1급	14:00 ~ 15:00 (60분)	15:30 ~ 17:10 (100분)	① 산림치유 대상 이해 ② 산림치유 자원 이해 ③ 산림치유 기획.관리 ④ 산림치유 실행			

※ 입실시간 종료 후 고사장 출입 및 평가시험 응시는 불가, 시험시간 변경시 재공고 예정

□ 시험문제 : 비공개

※ 단, 시험의 답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산림청고시 제2021-117호) 제11조의2에 따라 공개(아래 IV 참조)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필기구, 손목시계, 일반계산기(선택)

【신분증 인정범위】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 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이며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별첨1)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Ⅳ 가답안 · 최종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및 이의 신청기간

- '26. 2. 1.(일) 10:00 ~ 2. 7.(토) 18:00, 7일간

※ 신청방법: 산림치유지도사 담당자 메일(fcare@fowi.or.kr)을 통해 접수

□ 최종답안 공개기간 : '26. 3. 3.(화) 10:00 ~ 3. 5.(목) 12:00

□ 응시자의 가답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류가 없으면 개별적으로 회신하지 않으며 최종답안 발표로 같음함

※ 가답안 및 최종답안은 문항에 대한 답변호를 뜻함

Ⅴ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 기준

- 1·2급 자격시험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산림청고시 제2021-117호) 제7조

□ 합격자·합격률 발표(예정)

- '26. 3. 5.(목) 10:00, 홈페이지

□ 관련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담당 042-719-4342/4317

VI

수험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의 누락·오류·착오·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내 사진은 6개월 이내 반명합판(3×4cm) 컬러사진만 가능합니다.(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 ※ 접수 불가 사진 : 스냅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등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의 마감시간은 15:00까지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구, 손목시계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의 사용만 가능하며,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공학용·재무용)계산기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생리현상, 응급상황 등으로 더 이상 응시가 불가능 할 경우 수험자는 중도퇴실확인서를 작성 한 후 퇴실하며(재입실 불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퇴실 전 제출된 답안지는 채점을 통해 점수 인정)
 - ※ 평가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하고자 할 경우 시험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시험 포기로 0점 처리)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시험 응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첨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2조에 따라 급수별 양성기관에서 각각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은 중복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합니다.

*** 시험장(충남여자중학교) 오시는 길**



- ① **충남여자중학교 주소** :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68
- ② **대전복합버스터미널 → 충남여자중학교**
 - **버스(18분)**
 - 601번 "복합터미널 정류장" 승차 → "대성중고등학교 정류장" 하차(도보 182m)
- ③ **대전역 → 충남여자중학교**
 - **버스(20분)**
 - 107번 "대전역네거리 정류장" 승차 → "대성중고등학교 정류장" 하차(도보 182m)
 - **지하철(20분)**
 - 1호선: "대전역" 승차 → "오룡역" 하차(도보 597m)

<별첨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 장애인 등 응시편의 사항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편의제공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 증빙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1부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의사 진단서 사본 1부(배변장애 등의 진단서는 시험 응시에 불편사항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편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시간은 편의제공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최대 1.2배 연장할 수 있음 2. 편의제공 대상자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함 3. 편의제공 대상자가 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자가 장애로 제한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감독관)를 배치함 4. 창각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가 수화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 통역사를 배치함(수화 통역의 범위는 방송, 시험안내 등에 한함) 5. 편의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 화장실 이용(배변장애 등), 냉난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험실을 배정함

<별첨2>

수험자 부정행위 처리

구 분	내 용
부정행위자 처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함
부정행위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평가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평가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신호 등을 통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평가시험 중 평가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평가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평가시험 문제를 알고 평가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평가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사용하는 행위 1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12.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시험을 치르는 행위
사후 적발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의 평가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 부정해위자로 처리 2.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지 3.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 금품수수 등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여 자격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 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